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68 발의연월일: 2025. 1. 16.

발 의 자: 강득구·김영호·채현일

송재봉 • 민병덕 • 윤종오

전재수 • 박 정 • 김남희

강경숙 • 이인영 • 권칠승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하고,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직업교육훈 련생의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설비 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1년 여수에서 현장실습 중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빈번한 안전사고의 발생, 인격 침해 및 노동착취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산업체의 인식 부족 및 안전사고에 적절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문제와 더불어 현장실습산업체의 열악한 환경 등의 요인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공공기관 등과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게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공 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공공분야의 현장실습 연계를 통하여 보다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8조).

법률 제 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게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제8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⑤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
	에게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
	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현장
	실습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u>관</u>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
	<u> 방공기업</u>